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4 발의연월일 : 2024. 7. 11.

발 의 자:김종양·최수진·박정훈

고동진 · 신성범 · 박정하

이달희 · 김태호 · 이종욱

김성원 · 정희용 · 주진우

최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이오의약품, 방위산업-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현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
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가.・나.(생략)

② ~ ⑥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